

공공기밀법 위반사건에서 증인의 신원공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Attorney-General v. Leveller Magazine Ltd
and Others 1 Queen's Bench Division 1978 년 5 월 19 일

<사실개요>

공공기밀법(the Official Secrets Acts)을 위반한 피고에 대한 기소절차과정에서 검찰당국은 증인을 소환하면서, 만약 증인의 신원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A 대령의 신변에도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근거에서 그를 A 대령으로 호칭, 증인의 신원을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다. 법정은 증인의 성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서류상으로 법정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당국은 마지못해 그 지시에 따르되 A 대령 대신 신변에 어떤 위험도 없는 B 대령으로 호칭하고의 하였다. 어쨌든 검찰측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의 신원을 감출 것을 주장했고, 법정에서는 증인의 성명을 서면으로 쓰되 오직 피고측 변호인과 법정에만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송절차가 종결된 후 B 대령의 이름이 피고증의 하나인 한 잡지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다른 두 피고도 증인의 신원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은 출판사의 발행인 및 편집인들을 법정모욕죄를 적용, 기소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법정은 기소절차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한에는 증인의 증언시 그의 이름을 공개할 필요는 없되 서면으로 기술, 법정에 제출케 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법정은 B 대령의 성명을 기소과정에서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하였다.
- (2) 증인의 성명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성명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것이라는 공식적인 증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런 지시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지시를 위반하여 법정에서 증인의 성명을 공표하는 것은 법정모욕에 해당한다. 비록 그러한 조치가 법정밖에 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지시를 어길 목적으로 법정 밖에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법정의 권위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법정모욕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또한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1920) 제 8 조 (4)에 의하면 심리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비공개란 법정에서의 비공개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심리과정에 대해서만 비공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정판사는 증인이 그의 이름을 진술할 동안 방청을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증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상세하고도 적절한 협조요청을 하지않았던 것이다.

<기소이유>

법무장관은 레벨러 잡지사(Leveller Magazine Ltd.) 및 레벨러(The Leveller)지의 발행인 그리고 피스 뉴스사 및 피스 뉴스(Peace News)지의 발행인, 전국언론인연합회(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및 저널리스트(Journalist)의 발행인, 레벨러의 편집인인 클라크(David Anthony Clark), 사우스우드(Russell David Southwood), 토머스(David Nigel Mitchell Thomas), 켈리(Philip John Kelly), 고프실(Timothy Reginald Gopsill) 그리고 「피스뉴스」의 편집인인 레이베킬(Alison de Reybekill), 린톤(Helen Linton), 존스 (Christopher Jones), 홀더네스(Michael Holderness), 벨리(Albert Beale)씨 등을 R. S. C., Ord. 52 를 적용, 법정모욕혐의로 기소를 제기하였다. 기소근거는 다음과 같다. 1977 년 11 월에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s) 위반혐의자에 대한 기소절차 과정에서 토텐햄 치안법정(Tottenham Magistrates' Court)은 증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재가를 한 바 있는데, 상기인들은 증인의 성명을 보도했기 때문에 법정을 모욕한 사실이다. 위 사실은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기소지지이유>

가능한 한 모든 소송은 공개 심리되어야 하며, 그 제한이 가능한 한 최소규모로 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더라도, 국가적 이익에 필요할 때는 비공개적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증인이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서도 증언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법정의 고유 권한이다. 만일 증인이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증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면, 그의 성명이나 신원 등을 발표한다는 것은 비록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법정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원공개가 재판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해는 두 가지 넓은 의미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 (1) 만일 법원이 증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증인이 결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하고, 어떤 재판은 아예 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2) 이러한 것은 공개에 기밀이라는 형식이 가해지므로 증언은 비공개로 혹은 국민의 방청금지조치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최근에는 공갈갈취사건의 증인에게도 적용되었다.[Reg. v. Socialist Worker Printers and Publishers Ltd., Ex parte Attorney General(1975) Q.B. 637]. 만일 법정이 이러한 방법으로 증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피스 뉴스」(Peace News), 「더 레벨러」(The Leveller) 그리고

전국언론인연합회(National Union of Journalists)가 견지하고자 하는 공개재판절차는 비공개로 열려야만 할 것이다. 법무장관의 기소이유를 뒷받침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이는 1977 년 12 월 14 일 B 대령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증언하도록 허락 받았는데도,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이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의도에 어긋나는 줄을 알면서도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피스 뉴스」(Peace News)와 「더레벨러」(The Leveller)가 공모하여, 판사가 일견하여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의 기소를 취하하게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B 대령을 그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충분한 서류상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의도하면서도, 그들은 실상 그 목적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 목적은 정치적 의도를 띄고 나타났는데 이는 기소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매체라는 것은 공공이익의 문제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다룰 수는 있으나,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B 대령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 그의 신원이 밝혀 짐으로 그가 과거에 어디에서 복무했으며, 어떤 부대에 있었는지 소급해서 알기 쉽게 되었다. 만일 B 대령과 같이 특수한 분야의 일을 맡은 전문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그를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피스 뉴스」에서는 B 대령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한 법정의 지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더·레벨러」 역시 이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잘 알고 있었으며, 신원을 밝히는 것이 나쁘리라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무장관 대 타임즈 사(Attorney-General v. Times Newspaper Ltd. 1974 A.C. 273)의 판례에서 모욕의 문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역시언론의 자유와 재판진행의 필요성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법정의 임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사건에 적용한 모욕죄와 지금의 사건과는 다를지라도 형평의 원칙 하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건의 취지가 지금의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 사건에서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 법정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와 같은 법규로써 사법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B.B.C 방송국사건(Attorney-General v.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978 I.W. L. R. 477)의 판례를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관습법상으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다면 증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사법권도 있어야만 한다. 재판부는 B 대령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밝히지 않을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1920 년의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에 의해서도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Rex v, Governor of Liwes Prison, Ex parte Doyle 1917 2 K. B. 254.) 이번 사건은 1960 년에 제정된 재판집행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의 제 12 조 (1)항의예외 조항에 해당하는데, 이 법에는 비공개재판개시 이전에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밝히는 것은 법정모욕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방청금지(in Camera)라는 용어는 제 8 조 (4)항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그 조항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때 구술에 의한 것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람들이 B 대령의 이름을 듣지 못하도록 조치되었을 뿐이다. 1920 년에 제정된 법의 8 조 (4)항은 그것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한 의미로 되어 있었다. 법정이 비록 대령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는 명백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지시는 증인의 이름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할 수는 있어도, 공개법정에서는 구술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이었다. 증인의 신원공개여부는 법정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언론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규칙을 정했을 때는 언론인은 그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만일 이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모욕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법정의 의도를 모욕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Reg. v. Border Television Ltd, Ex parte Attorney-General-The Times, January 18, 1971 회 판례 참고)

<전국언론인 연합회측 변론>

재판과정에서 보안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법정은 오직 증인의 신원공개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는가에 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심은 오직 재판의 진행과 B 대령의 성명을 공개치 않으려는 데에만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사항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진행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할 만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대령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고, 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서명령위반이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문제는 그 위반이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겠는가, 또는 안 하겠는가에 있다.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령 위반도 있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가이다. 국가적 안보는 1920 년의 공공기밀법(the Official Secrets Act) 8 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정은 필요할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조항에서 공중이라는 말은 언론기관(the press)도 포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보도기관은 공중의 귀이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1960 년의 재판집행법(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제 21 조 (1)항 (c)에서도 규정지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타임즈사 사건(Attorney-General v. Times Newspaper, Ltd., 1974, A.C. 273)에 대한 글레이스데일 판사의 의견에 의하면, 법의 집행이 방해를 받거나 아닌가의 문제가 첫째이고, 다음이 이익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성명을 공개해서 안 된다는 증인이 B 대령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한 주장을 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은 관례와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법정이 고려해야만 했던 균형은 만일 정당한 재판진행을 방해할만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판사가 고려해야 할 균형과는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정당한 재판진행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있느냐는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장차 B 대령과 같은 증인의 자진출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다.단지 B 대령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해롭다고만 하는 것은 코레스 주식회사 사건(In re kores Manufacturing Co. Ltd.'s Application, 1958, R.P.C. 448)의 판례를 보더라도 충분하지 못하며, 좀 더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명령이 법정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만이 증언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그러한 명령이 법정 밖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지금 이것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정당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B 대령의 신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후속 규제도 없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영국국민으로부터 사건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필요에 근거한다. 어떠한 명령서도 제시되지 않았고, 명령서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B 대령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 장의 서류에 쓰도록 허락하였으며, 이 허락도 명령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증거는, 과연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명령에 의한 지시와 동의에 의한 지시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이 동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법정의 결정에 따른 소송은 아니나, 법정은 합당한 지시를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명령의 위반이 정당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었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B 대령의 이름은 허가에 의하여 씌여졌으며, 개인의 신변을 위협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주장도 없었고, 피고인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지시가 그

소송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계속 구속력이 있는가, 그리고 소송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밝히는 데에도 계속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송사건이 없는데도 B 대령의 성명이나 지위를 발표했다면 이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하에서도 구제방법은 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의회의 소관이다. 공공기밀법을 확대해석해서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장차 증언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그럴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공갈갈취사건의 희생자와는 다르다. B 대령은 국가공무원이며, 전문적인 증인이다. 만일 공갈사건의 희생자가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이 방해 받는다면 그 범죄사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대령이 그의 이름과 주소를 서면으로 쓴 이상 증거서류는 작성된 셈이다. 그러나 그 서류가 기밀사항이며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법무장관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법정모욕을 구성한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전의 판례가 없다 만일 그것이 증거서류라면, 법정은 이 서류의 보도를 금지하는 또 다른 명령을 했어야만 했다. 이것은 공갈갈취사건과 관련된 사회주의 노동자출판사 사건 (Reg. v. Socialist Worker Printers and Publishers Ltd., Ex parte Attorney-General, 1975, Q.B. 637)의 특수한 경우를 참조해도 될 것이다. 이번 법무장관의 소송제기는 성립될 수 없다. 어떠한 위협을 주었다든가, 재판이 방해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Morris v. Crown Office, 1970, 2 Q. B.114 와 Reg. v. Waterfield, 1975, 1W. L. R.711 을 참고했음).

<레벨러 잡지지속 변론>

법정모욕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고 또한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때에만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다. 레벨러지의 행동을 정치적인 캠페인의 범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만일 법정이 B 대령의 이름을 비밀로 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면, 군부가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피고들의 말은 옳다. 만일 그 명령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피고인들이 위반한 것이지만, 이것을 정치적 캠페인으로 규정 시켜버리는 것은 법무장관의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금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만약 명령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정의 명령서가 B 대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반은 법정모욕죄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왕실은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왕실은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만일 명령을 하고자 한다면, 그 견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증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한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1920) 8 조(4)에 따라 증인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증거에 의해서 그 근거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합의가 있을 경우와 정황이 자명할 때, 만일 증인의 이름을 차단하는 것이 심리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법무장관은 그러한 명령이

법정에 의해서 하달되었으며 그것의 위반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만약 증거상 명령이 부정된다면, 법무장관은 모욕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증거는 유효한 명령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법무장관은 반대로 법정을 만족 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출판사 사건 (Reg. v. Socialist Worker Printers and Publishers Ltd., Ex parte Attorney-General 19750. Q.B.637)의 판례는 공갈죄에만 적용시킬 수 있고, 더 넓은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기밀과 공갈죄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면 단지 이름을 공개치 못한다는 것인데, 이름을 공개치 못한다는 것만으로 재판을 비공개 리에 진행해야 할만큼 강제이유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한 원칙은 오도되기 쉽다. 공공기밀법 제 8 조 (4)에 의해서 증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된 법정의 법적권한이 있더라도, 관습법에 의하여 다시 명령할 부수적인 권한은 없는 것이다. 어떠한 명령이 유효하려면 왜 이것이 국가안보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가에 대한 증거를 심리한 후에, 법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스코트 사건(Scott v. Scott 1913 A. C.417)과 사회주의 노동자출판사 사건의 판례에서는 비공개재판을 입법적으로 정하는 데는 입법부 권한에 의거해야지 관습법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입법적 권한이 이미 공공기밀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법정이 비공개재판의 일반적 재량권을 갖고있지 못하나, 보호나 정신이상 그리고 직업상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권한은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방해되더라도, 이 때문에 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레이베킬, 린튼, 존스측 변론>

법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서 증거가 비공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허가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관습법상으로 없다. 스코트 사건판례의 어느 곳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한다는 것을 임의로 규정한 곳은 없다. B 대령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이번 경우는 스코트 사건의 경우에 예시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법정은 증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허가할 법적인 권한은 있다. 그러한 명령에 대한 필요성이 증거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며, 공공기밀법의 제 8 조 (4)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출판사의 판례에서 법적권한이 비공개로 심리하는 것에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하고 잘못된 해석이다. 증인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재판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하고 위협스러운 침해이다. 모욕죄를 적용하기 전에 법정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명확하고 명백한 명령서를 하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스 뉴스사측 변론>

증인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허락이 인정된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정판사가 보도기관에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단순히 요청만으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사법부의 법정모욕 적용 절차상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투커 보고서(Report of the Departmental Committee on

Proceedings before Examining Justices, 1958, Cmnd. 479)에서는 증인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되어있다. 요청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처럼, 허용조치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측 변론에 대한 답변>

법정이 B 대령에게 성명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토록 허용한 조치는 명령은 아닌 것으로 법무장관이 인정했다고 피고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명백한 결정이 있었으며, 법무장관의 말은 그러한 결정이 그것과는 별개의 명령이었는지 그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한 법무장관이 형사소송절차를 밟고 있던 세 명의 피고들의 기소에 아무런 장애도 없으리라고 인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장관은 모욕이나 방해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함은 사건을 미궁에 빠뜨릴 뿐이다. 법정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증인의 이름을 소송절차과정에서는 밝히지 않도록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방침이 채택됐는데도 증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모욕 행위이다. 상황은 공갈죄의 경우와 일치한다. 단 하나 바른 점이 있다면 공갈죄의 경우는 사적인 이해가 얽혀있고, 국가적 안보의 경우는 공적인 중요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코트 사건에서는 국가안보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관습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다. 렉스 사건(Rex v. Governor of Lewis Prison, Ex parte Doyle 19172 K. B. 254)에서는 스코트 사건에서 언급된 판례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갈죄에 있어서 증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고유한 권한이 있다면, 국가안보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공공기밀법 제 8 조(4)의 첫 줄 『그 외에 그리고 법정이 갖고있는 권한이 방해 받음이 없이……』에서 그러한 관습법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 채택된 소송 절차는 비공개이며 이것은 8 조(4)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1960 년의 재판집행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의 제 12 조를 새겨보면 이번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제 12 조의 용어들은 단정적이다. 제 12 조는 소송절차를 발표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란 국가안보의 이유로 비밀리에 해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일은 그러한 비밀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된다. 만약 공중 및 언론이 사건의 진행을 방청할 수 있다면 법정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증거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밟는 방법이 채택된다면 어떤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비공개재판에서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중은 방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틀리다. 매일매일 증거가 없이도 적용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사전에 합의를 보는 일이다. 국가적 안보에 관한 문제인 경우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67 년의 형사재판법 Criminal Justice Act 6 조와 1952 년의 치안법정법 (Magistrates' Court Act) 41 조를 참조]법정이 B 대령의 이름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알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증거가 옳다면 그러한 절차가 취해졌다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 집행 방해에 해당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판례와 사법절차를 우롱하는 것이 된다.

<위저리 판사의 판결>

본인이 지금부터 읽으려는 이 판결문은 판사 각각이 서명한 것이다. 본 사건은 법무장관(Her Majesty's Attorney-General)이 대 법원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제 52 조에 준하여 「피스 뉴스」와 「더 레벨러」의 발행자 두 주식회사가 모욕죄를 범했다고 소송제기를 함으로써 법정에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소송제기는 정기간행물 「저널리스트」의 발행인으로 알려진 전국언론인연합회(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와 위 세 출판사에 관계된 여러 개인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법무장관의 소송제기가 있기까지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오 브레이(Aubrey), 베리(Berry) 그리고 캠벨(Campbell) 세 청년은 중앙형사법원(Central Criminal Court)에서 공공기밀법(the Official Secrets Acts)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소송절차가 1977년 11월 토텐햄 치안법원에서 열렸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의 입회 하에 기소가 진행되었다. 변호인단이 법정에 제출한 첫번째 물적증거는 세 피고인이 나눈 대화가 들어있는 녹음 테이프였다. 변호인단은 1920년의 공공기밀법 제 8조(4)에 의거해서 이 테이프를 비공개로 듣기를 신청했는데,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그 위에 그리고 갖고 있는 권한이 방해받음이 없이 법원은 어떤 소송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게끔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한 법 혹은 이런 류의 법을 위반 했을 때 진행될 기소절차과정, 항소절차에 있어서, 또는 중요한 법이 공공기밀법을 위반한 중죄 혹은 경범죄를 심리할 경우에도 검찰당국은 그러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을 신청하게 되는 것은 기소과정에서 제시될 증거나 진술의 공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방청객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어떤 부분의 심리 때에는 방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병정이 명령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서든지 형의 선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테이프를 비공개로 심리해야 한다는 그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은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러한 신청에 대한 반대견해도 있었으나 법정은 이를 인정, 테이프는 비공개로 청취 되었다.우리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단지 한 명의 증인이 그 테이프를 듣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만 알고 있을 뿐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에 틀림없다. 테이프의 내용을 다 들은 후에 고등법원에서는 테이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테이프가 국가안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전문적인 증인을 불렀다. 증인의 증언을 비밀리에 심리한다는 직접적인 신청은 없었던 것 같으나 왕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만일 증거가 공개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면 그 증인의 신원은 비밀로 해야 하며 단지 「A 대령」으로만 언급되어야 한다. 법정은 A 대령의 이름이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과 변호인단 앞에 신원을 밝히는 문제를

심사숙고 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그들은 A 대령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위태롭고, A 대령 개인에게도 위험스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 심리 때부터 A 대령이란 칭호 대신에 B 대령이라고 호칭되었다. B 대령의 직책은 A 대령과는 다른 것으로 말해졌으며, 그의 개인적 신원도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B 대령은 단지 자신의 이름을 한 장의 서류에 기록하여 변호인단과 법정에 보여줬을 뿐이며, 그 다음은 순조로이 증언이 진행되었다. 토텐햄 치안법원에서의 소송절차의 재구성부분에 대해 증거는 버틀러(Anne Butler) 양과 해럴드(Albert Harold Beale) 씨의 증언에서 나오는데 그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버틀러 양은 그녀의 선서서에서

『 1. 본인은 검찰총장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임 법률보좌관으로서, 그를 대신해서 토텐햄 치안법정에서 있었던 베리, 오브레이, 캠벨에 대한 기소절차에 참석하였다. (2. ……)』

3. 1977년 11월 10일 쿼베(Michael Coombe) 왕실연호사가 치안판사에게 신청하기를 다음번의 증인은 「A 대령」으로 할 것과,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4.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방침에 반대했으며, 피고인 캠벨 측 변호사는 만일 법정이 왕실의 신청을 채택한다면 A 대령의 이름을 쓰게 해서 그것을 피고의 변호사들과 법정, 그리고 피고들에게는 보이도록 요구하려 했다.

5. 법정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판사는 A 대령의 이름이 쓰여져서, 그것이 법정과 피고 변호인들 그리고 피고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사는 그 증인이 피고인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안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6. 왕실은 'A 대령'이라고 호칭하지 않았고, 심리는 연기되었다.

7. 1977년 11월 14일 내려진 결정에 따라 법정은 왕실이 B 대령으로 호칭하는 것을 허락했고, B 대령의 이름을 한 장의 종이에 써서 그것을 법정, 피고의 변호인단, 그리고 피고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법정이 B 대령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허락한 것은, 왕실에서 B 대령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다.』

본인이 지금 읽은 5, 6, 7 항은 법정서기 프래트(Pratt)에 의해 정확하다고 인정되었다. 다음 빌레 씨의 선서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첫날 기소인측 변호사는 일부의 소송절차를 신청했는데 즉 테이프의 심리가 비공개로 열려야 한다고 신청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의 반대가 있는 후, 법정은 비공개로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본인이 알고 있고, 확실히 믿기로는 몇 시간에 걸친 비공개심리가 있는 후 둘째 날에 법정은 다시 공개로 심리하기 시작했다.』

4. 1977년 11월 10일 아무 증인도 소환되기 전에 오브레이 측 변호인은 말하기를, 자신은 왕실이다음 증인(육군 중령 A를 말함)은 완전히 기밀이며, 법정과 피고에게도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소인 측 변호사인 쿼베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피고인측의 변호인들은 그러한 절차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론을 폈다.

5. 법정의 결정은 증인의 이름은 쓰여져야 하며, 법정과 피고에게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여기에 덧붙이기를 법정은 그 이름이 비공개로 될 것을 우선적으로 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실제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했다.

6. 1977년 11월 14일 B 대령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 사건을 위해 B 대령으로 호칭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쿼베 변호사는 B 대령에게 종이에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고, B 대령은 그렇게 했다. 그 종이는 법정과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전달됐다. 피고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법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B 대령은 자신의 증언을 계속 했는데, 국가적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추측되는 이 전문적인 증언의 성격을 가진 이 증언이 베리에 의해 비밀리에 노출되었다.』

기소절차는 11월 18일경에 끝났다. 1977년 12월 5일 「더 레벨러」지에는 B 대령의 신원을 밝히는 글이 실렸다. B 대령의 신원은 그의 증언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사해서 밝히게 되었다고 했다. 「더 레벨러」지에 실린 글은 울프(Woolf)의 말대로 대령의 신원을 드러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공공기밀법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그리고 세 명의 피고에 대한 특별소송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표행위는 공적 기밀을 항의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들 모두가, B 대령이 이름을 쓰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비공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공공기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B 대령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은 B 대령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토텐햄 치안법정의 결정을 파기시키려는 노력을 신중하게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이 법무장관의 장처럼 법정모욕에 해당하는 것인가! 법정모욕죄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법정의 권위를 계획적으로 우롱하는 것이다(Attorney-General v. Butterworth, 1963, 1 Q.B. 696의 판례 참조). 지금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법정은 증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것을 명했고, 피고인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의 결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들에게는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일견하여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판결의 모든 요점들을 상세하게 고찰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논쟁의 중심점들을 취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종류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지시서나, 법정의 명령서나 그 명령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신원을 비밀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명령서도 없었고 단지 요청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사회주의 노동자 출판사 사건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주장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심리판사는 실제로 지시하기를 증인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단지 법정에서 서면으로 기록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이 법정에 서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증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금하는 법정에 의한 지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이름은 외부에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요청의 두 개의 근거 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하나의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버틀러 양은 그때의 선서서에서 말하기를, 1977년 11월 14일

소송절차가 종결되면서 판사가 초기의 결정을 확정시키고 강조하기를, B 대령의 신원을 밝히는 어떠한 기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서기 프렛(pratt)는 그의 선서서에서 버틀러 양과 특정한 몇몇 문장에서 모순되는 선서서를 했다. 이렇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진술들에 의존할 수는 없었고 B 대령 자신의 증언에 의존하게 되었다. 만일 사실로 판사가 버틀러 양이 말한대로 지시했다면, 판사의 말은 단지 법정 내에서만 권위를 갖는 것이다. B 대령에게 그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한 것은 A 대령에게 행한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러한 결정의 권위이다. 만일 그것이 유효한 결정이라면 후에 소위 지시서를 덧붙일 필요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 법무장관 측에서 제출한 근거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더라도 기소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그의 기소이유를 수정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했으나, 그 허가는 취소되었다. 증인으로 하여금 이름을 쓰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있다. 법무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본인이 읽은 1920 년의 공공기밀법의 제 8 조(4)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점은 그 조항의 『공중의 일부는 어떤 부분의 심리 시에는 방청을 금해야 한다』는 규정은 증거를 심리할 때도 방청금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는 배제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조항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사람들이 증거의 일부분의 심리를 방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청금지는 법정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증인의 증언이 일부 혹은 전부가 정당하게 비밀리에 심리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게끔 허용 조치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밀리에 심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권리를 훨씬 덜 제한하는 것이다. 법정은 B 대령의 신원을 심리하거나, 그의 증언 전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비공개 리에 진행했어야 했다. 법정은 1920 년의 공공기밀법 8 조(4)에 의하거나 1967 년의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6 조의 대단히 확대된 개념에 의하거나, 관습법에 따르거나 했어야 할 것이다. 렉스 사건의 판례를 보면 국가적 안보에 반하는 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하에서 B 대령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것은 스코트 사건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증인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결과를 얻어내는 간편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않으면 오직 법정을 비공개로 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정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왔다. 모든 법정은 증거의 규칙이나, 일반적 실무에 의해서 각기의 소송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요청은 증인들을 문제삼지 않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결정의 위반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여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법정 내에서 법정의 판결을 우롱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법정의 판결을 위반한다면, 법정 밖에서라도 우롱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것이다.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남게 된다. (1) 법정은 강제적인 명령서를 발부했는가 아니면 보도기관에게 공표하지 말라는 단순한 요청만을 했는가. 이 여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법정 안에서만 강제성을 띌 수 있는가, 아니면 법정 밖에도 해당하는 가이다. 의도적으로 법정 안에서 B 대령의 신원을 공개했었다면, 그것은 법정의 지시를 위반했으므로

기소사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의 요청에 불과했다면 대령의 신원은 공개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공개 요청은 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정의 결정이 법정 밖에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이 B 대령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것을 결정한 것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여기 문제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은 법정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법정에 대한 모욕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지시서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법원의 명령서 같은 것들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2) 증거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비공개로 심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세들러 변호사가 상세히 추구한 문제, 즉 아무리 대령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더라도, 스코트 사건의 판례에 의해 정당화된 규칙에 따라서 충족되어야 할 사건의 조건들이 있다. 그러므로 1920 년의 공공기밀법 제 8 조(4)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 왕실의 주장은 『국가안보에 위배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은 물론 항상 공개적인 소송절차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형식적인 증거 이상의 것이 아닐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법정은 공갈죄의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the Socialist Worker [1975] Q.B. 637 사건참조).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그러한 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적합하지 못하다. 공중의 이익에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있어서 치안판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을 지지해주는 상원의 권위도 있다(Reg. v. Lewis Justices, Ex parte Secretary of State for Home Department 1973. A.C. 388, 404-407 의 판례 참고). 마찬가지로, 법정이 법정 밖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것 같은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증인이 자신의 증언을 마음대로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언을 들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B 대령이 증언을 하기 위해 나왔을 때 법정은 이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하며 더이상의 형식적인 증언을 요구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다. 윌리엄즈(Melville Williams) 씨가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B 대령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않는 한 피고인들은 모욕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란 법정의 의도를 계획적으로 우롱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은 그러한 행위로부터 법정이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법무장관이 말하는바 공중의 이익이다. 법정은 사회주의노동자출판사 사건의 판결의 권위를 따라야 할 것이다. 논의도중에 이 사건에서 채택된 원칙들을 더 확대 해석함으로써 초래될지 모르는 결과들에 대해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경고가 있었다. 우리는 그 사건이나 혹은 이번 사건이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법에 어떤 국면에 하나의 어떤 원칙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기가 어떠한 간에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과정이 국방성의 결정에 대한 반대견해 표명일 뿐만 아니라 1911~1939 년의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s Acts)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법정의 판결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들의 법정모욕죄는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법률 고문단은 법정에 유죄라고 통고했고, 위저리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라고 인정하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도 이보다 정밀하게 다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당 법정에서 개진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으므로 피고들 각 개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명령서도 작성치 않을 것이다. 특별히 「더 레벨러」지의 경우 피고들 개개인의 선택은 순전히 무작위 선택이며, 우리는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벌금형에 대한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피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이러한 것에는 대단히 실제적인 재정상의 고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 보면, 총 합계가 실제로 증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국언론인연합회(National Union of Journalists)가 사과를 표명했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반면 다른 피고들은 지금까지 읽은 대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다시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판단한 결과 전국언론인연합회(National Union of Journalist)에게는 지금까지 개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조금적은 액수인 2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두 출판사인 「더 레벨러」지와 「피스 뉴스」지에게는 각각 5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